

사이버성폭력수사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근거한 심리지원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Proposal on the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for Cyber
Sexual Crime Investigators Based on Their Mental Health Survey

김보라 (Bora Kim)

호남대학교¹⁾

임수진 (Sujin Lim)

호남대학교²⁾

〈 국문초록 〉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어두운 측면 중 하나는 사이버범죄의 급격한 증가이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업무 특성상 불법 성폭력 영상 자료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리외상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다 이들의 대리외상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성범죄를 다루는 수사관의 정신건강 특히 외상 관련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심리지원제도에 관한 수사관들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기관의 심리지원제도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업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지원과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이버범죄, 디지털성폭력,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리외상, 심리지원제도

1) 제1저자, bora.kim@honam.ac.kr

2) 교신저자, sujilim429@honam.ac.kr

1.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한 경찰의 업무 특성 중 하나가 디지털 수사 자료나 증거를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경찰청 내에서도 조직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는데 2000년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2014년에 사이버안전국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에 경찰청과 18개 시·도 청에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이 신설되었다(안재열, 이상진, 2022). 사이버수사관(본청·지방청·경찰서)은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600명이며 이 중 사이버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은 총 102명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내 21개 팀에 소속되어 있다.

순직 경찰관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찰관의 수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부민서, 조운오, 2001) 경찰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Benedack et al., 2007; Haugen et al., 2012). 업무 특성 상 외상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되는 수사관은 급성스트레스장애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ngt et al., 2009).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인 성범죄 증거물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안재열, 이상진, 2022). 이러한 범죄 증거를 반복적으로 시청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차적인 심리적 어려움이 대리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이며, 흔히 외상 관련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상담사에게서도 나타난다(권해수, 2011; 남희경, 2015; Perez et al., 2010). 미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아동성착취물과 성폭력 사건에 노출된 수사관은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외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발생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Burruss et al., 2017). 국내 연구에서도 영상물에 의한 간접적 외상만으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증, 자살 충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박상의 등, 2018). 그러나 아직까지 디지털성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관의 심리적 건강 상태에 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고, 대다수 경찰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사이버성폭력수사관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정신건강 현황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대리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심리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수사기관의 심리지원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외상 관련 심리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향상을 위해 현 심리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배경

2.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심리적 및 신체적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장애이다. Breslau et al.(1991)은 외상 사건을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개인을 압도하는 경험’이라 정의하였고, Tedeschi et al.(2004)은 ‘삶의 위기 혹은 삶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으로서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정신의학회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가 발간한 DSM-5에는 외상 사건을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하고, 개인의 신체적 혹은 심리적 경계를 침범하는 요소들'로 정의하였다(APA, 2013).

경찰은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일반인에 비해 외상 사건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외상 사건의 수위도 일반인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다. 경찰 수사관은 6개월간 평균 3번 이상 외상 사건을 경험(Patterson, 2001)하고, 전체 경찰관 중 89% 이상이 외상 사건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도 있다(김종길, 2012; Hartley et al., 2013). 따라서 이들은 직무 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Gray & Collie, 2017). 물론 소방공무원이나 응급구조요원, 응급실 종사자도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위협하고 폭력적인 범죄 사건 및 현장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경찰수사관은 다른 고위험군보다 외상 사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심리적 충격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다(Gray & Collie, 2017; Hartley et al., 2013).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유행을 연구를 살펴보면, 해외 연구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12~35%로 일반인의 4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Clair, 2006; Fox et al., 2012). 국내 연구에서는 약 12-33%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군일 것이라는 추정치가 보고되었다(신성원, 2012; 이희선, 2012; 김인아, 2013). 특히 국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성원(2012)의 연구에서 33.3%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군, 8.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외상 사건 경험의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경우를 보면, 사이버 수사 관련 3개 부서 65명을 대상으로 한 안재열, 이상진(2022)의 연구에서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소속 수사관 25명 중 22명(88%)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다른 경찰 직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높아진 각성수준으로 인해 불면증을 포함한 다양한 수면 장애를 경험할 수 있으며(Mysliwiec et al., 2018; Sinha, 2016; Williams et al., 2006), 우울, 자살 사고와 같은 부정 정서나 파국적인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심서영 등, 2016; Violanti et al., 2006). 이 외에도 외상 사건과 관련 있는 장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침습 증상, 사건 관련 자극을 피하는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은 장기 결근, 약물 남용, 스트레스 관련 질병, 문제 행동 등을 보이거나 경찰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McNally & Soloman, 1999). 디지털 범죄가 크게 증가하며 업무강도가 높아진데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외상 사건에 이차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은 더 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협에 놓여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2.2. 대리외상

대리외상이라는 개념은 McCann and Pearlman(1990)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이들은 대리외상을 '직접적으로 외상을 경험하지 않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외상 경험에 지속적으로 간접 노출된 결과 인지적 구조에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tamm(2005)은 대리외상의 특징을 감정적 고갈, 역전이,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로 설명했다. 즉, 대리외상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반복적으로 사건에 관한 정보에 노출될 경우 피해자가 겪는 것과 유사한 심리적 충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간접 외상이라고 하기도 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남희경, 2015; 박지영, 2011; Bride et al., 2004).

기존 연구 검토 결과, 경찰수사관을 대상으로 대리외상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대리외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근무 시간이 긴 경우 그리고 상담 업무가 과도한 경우 대리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Kadambi & Truscott, 2008), 동료나 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반대로 대리외상 경험에 완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tti & Lourel, 201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박상의 등(2018)의 연구에서는 최근 3개월간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녹화된 동영상을 시청한 집단 즉, 간접적으로 미디어에 의해 외상에 노출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 신체증상, 불면, 자살사고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외상후스트레스,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 중요한 일에서의 실수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직업적으로 성폭력 수사 자료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고 피해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외상 사건에 대해 듣게 되는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경우 사건 자료나 피해 진술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성착취물 영상에 노출된 미국의 연방 법 집행 수사관의 이차 외상스트레스와 소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상당수가 외상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접한 사례가 많을수록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가족에 대한 보호성, 동료에 대한 의존, 일반적인 냉소 및 불신감, 그리고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erez et al., 2010). 일각에서는 대리외상을 개입이 필요한 직업 재해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Bride, 2007). 사이버수사관의 심리적 안전과 복지는 수사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대리외상의 경험을 예방하고 외상 관련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

선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심리지원제도

사이버수사대나 사이버성폭력팀에 근무하는 수사관에 특화된 맞춤형 심리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으며 경찰청 내 대다수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심리지원제도는 마음동행센터 상담, 민간상담소 상담, 지정상담, 긴급심리지원, 공감힐링과정 등이 있다(김인철, 2020).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담하는 마음동행센터는 2022년 기준 서울의 경찰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2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총 18개 센터가 있으며 상주하는 상담 전문 인력은 26명이다. 횡수에 제한없이 경찰청 예산으로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치료를 수행한다(김대중, 2021). 민간상담은 상담을 원하는 경찰공무원 1인당 연 6회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상담소나 자택 중 선택하여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이용이 가능하고 대면상담, 전화상담, 화면상담을 제공한다(김대중, 2021). 마음동행센터상담이나 민간상담은 한국 EAP 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하고, 업체에서 마음동행센터 또는 민간 상담소를 연결해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김인철, 2020).

지정상담은 스트레스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일정 횡수의일대일 대면 상담을 하도록 지정해서 심리적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예방프로그램으로(경찰청, 2020; 김대중(2021)에서 재인용) 사이버수사관은 아직 지정상담 대상자가 아니며, 현재는 과학수사관이 지정상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김인철, 2020).

긴급심리지원은 참혹한 살해 현장을 목격했거나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거나 부패 혹은 훼손된 시체를 목격하는 등 충격이 큰 외상성 사건을 경험해서 긴급한 심리지원이 요구될 때 상담사가 직접 기관에 방문해 상황을 겪은 수사관을 대상으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경찰청·Kcapa, 2020; 김인철, 2020). 사건 직후부터 한달 간 총 4회까지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하는데 전담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음동행센터에 연계하기도 한다.

공감힐링과정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 정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경찰수련원 등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고, 특강, 심리 진단, 집단 또는 개인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김인철, 2020). 심리적 문제 치유보다 사전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며, 심리역량강화 워크숍이나 템플스테이 등도 비슷한 목적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의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그 중 하나는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수사관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조직 내 구성원의 인식(부민서, 조운오, 2021)이고, 또 다른 문제는 실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도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다(김대중, 2021; 김인철, 2020). 이는 상담 전문가의 수사 업무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원인일 수 있는데 현재 경찰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담하는 마음동행센터에서조차 경찰수사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담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심리지원제도에 관해 사이버성폭력수사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업무의 특성상 심리적 외상 위험이 높은 이들의 정신건강 향상과 심리질병 예방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떤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1)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심리적 외상 정도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개인 수준, 조직 수준의 영향을 알아보는 외상 관련 연구와 (2) 국내외 수사관 대상 심리지원제도 및 국내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알아보는 제도 관련 연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지원제도 개선방향을 논문 말미에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자료는 설문방법으로 수집하였고, 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피드백을 받아 초안을 수정 보완한 후 사이버수사관 2인의 검토를 추가로 받아 내용타당성을 점검하였다.

3.1. 측정도구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를, 대리외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Secondary Traumatic Scale: STSS)를 사용하였다. 외상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연구됐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이라는 점 그리고 수사자료 대부분이 성폭력 영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Perez et al.(2010)이 폭력적 영상자료를 많이 다루는 수사관의 인지, 정서, 행동 상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혐오적인 미디어에 대한 반응(Reactions to Disturbing Media)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이버성폭력 수사와 관계가 있을 만한 15개 문항을 선별했고, 해당 문항들이 과보호성향, 직장동료에 대한 유대감, 사람에 대한 냉소적 불신과 같

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높아 ‘대인관계 심리반응’이라 명명하였다. 실제 설문에 사용된 문항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조직의 구성원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업무와 조직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상집, 2016; 지성구, 최선규, 2013; 허병준, 이형용, 2021). 예를 들어, 외상 사건은 수사관의 장기 결근, 문제 행동, 조기 퇴직과 관련이 있고(McNally & Soloman, 1999),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상운, 2014), 아동성착취물 영상으로 인한 이차외상은 이직의도를 높일 수 있다(Perez et al., 2010). 심리적 외상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직무스트레스가 경찰관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는 적지 않다(김대중, 2021; 이환범, 이수창, 2006; 진종순, 2014). 이에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김대중(2021)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심리지원 프로그램별 인지도, 이용 경험, 만족도 문항 등을 설문

에 포함하였다. 측정 변수, 문항, 출처는 <표 1>에 요약해 제시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배치된 수사관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약 2주간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56명의 응답을 수집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본크기는 작으나 전국 모집단의 규모가 총 102명이기 때문에 응답률은 54.9%로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표본크기의 한계로 인해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산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결과의 일반화와 통계적 검정력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박원우 등, 2010) 본 연구결과는 탐색적 성격을 띠고 있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 측정 변수 문항 및 출처

변수	측정문항	척도 출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판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 22개 문항: 과각성(6문항), 회피(6문항), 침습(5문항),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와 해리증상(5문항) 지난 1주일간 증상 경험 정도 응답: 전혀 없음(0점) ~ 매우 심함(4점)	Horowitz et al.(1979)의 사건충격척도를 Weiss와 Marmar(1997)가 개정한 것을 은현정 등(2005)이 번안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대리외상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Secondary Traumatic Scale: STSS) 17개 문항: 침입적 상상영역(5문항), 회피영역(7문항), 증가된 각성영역(5문항) 지난 1주일간 증상 경험 정도 응답: 전혀 없음(0점) ~ 매우 심함(4점)	Bride et al.(2004)이 개발하고, 박지영(2011)이 번안 및 수정
대인관계 심리반응	혐오적인 미디어에 대한 반응(Reactions to Disturbing Media) 척도 15개 문항: 과보호(5문항), 동료유대(4문항), 일반적 불신(6문항) 증상 경험 정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Perez et al.(2010)이 개발한 21문항 척도 중 15문항을 번안해 사용
조직효과성	직무만족 7문항: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업무를 통한 개인적 성장, 현재 업무와 원했던 직무의 일치, 지식과 기술의 충분한 활용, 높은 성취감 경험, 업무의 장래 전망 동의 정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0점) ~ 매우 그렇다(4점)	Quinn과 Staines(1979)이 개발하고 유수동, 전성훈(2017)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
	조직몰입 5문항: 조직에의 시간 할애, 조직생활을 통한 행복, 이직 의도 낮음, 조직 문제와 자신의 문제와의 일체감, 개인에게 조직의 의미 동의 정도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0점) ~ 매우 그렇다(4점)	Taylor(2008)가 개발하고, 이종건, 광원준(2015)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6	82.1	계급	순경	1	1.8
	여자	10	17.9		경장	7	12.5
연령대	20대	6	10.7		경사	22	39.3
	30대	31	55.4		경위	19	33.9
	40대	16	28.6		경감	7	12.5
	50대	3	5.4	경찰총경력	5년 미만	3	5.4
학력	고졸	10	17.9		5~10년	30	53.6
	전문대졸이상	46	82.1		10~15년	11	19.6
결혼	미혼	14	25.0		15~20년	7	12.5
	기혼(별거 포함)	42	75.0		20년 이상	5	8.9
입직경로	공채	40	71.4	사이버성폭력 팀경력	12개월이하	19	33.9
	사이버특채(경력)	12	21.4		13~24개월	12	21.4
	간부후보	1	1.8		25~36개월	12	21.4
	경찰대	2	3.6		36개월 초과	13	23.2
	기타	1	1.8	영상시청시간(일평균)	1시간 이하	16	28.6
			2~3시간		13	23.2	
			3~4시간		11	19.6	
			4시간 이상		16	28.6	
				전체	56	100	

4. 외상 관련 연구 결과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총점의 평균은 32.33점(SD=20.31), 대리외상 총점의 평균은 21.88점(SD=15.63)이고 두 변수 간 상관관은 유의했다($r=.915, p<.0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총점은 대인관계 심리반응 변수들(과보호, 동료유대, 일반적 불신)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대리외상 총점도 마찬가지로 이 세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조직몰입($r=.482, p<.01$) 그리고 대리외상과 조직몰입($r=.375, p<.01$)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수사관 중에서도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업무 강도가 높고, 경찰의 조직문화가 위계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깊은

동료의식 그리고 강한 집단 응집력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대리외상의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심리반응과 조직효과성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외상 집단을 구분하였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측정된 IES-R-K는 은헌정 등(2005)이 제시한 분류 기준 중 보다 엄격한 점수(민감도 1.00, 특이도 0.60)인 24/25점을 기준으로, 24점 이하는 저위험군(정상군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부분 장애군), 25점 이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외상후스트레스장애군)으로 분류하였다. <표 4>를 보면 고위험군의 비율은 60.71%(56명 중 34명)로, 일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이준희(2014) 연구에서의 41.1%, 과학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노선미와 김은아(2017)의 19.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IES-R-K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

〈표 3〉 변인 간 상관 및 기술 통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PTSD_총점	PTSD_침습	PTSD 수면·정서마비	PTSD 회피	PTSD 과각성	대리외상 총점	대리외상 회피	대리외상 침습	대리외상 과각성	과보호	동료 유대	일반적 불신	직무 만족	조직 몰입
PTSD_총점	21.88	15.63	1													
PTSD_침습	8.39	5.08	.953**	1												
PTSD_수면·정서마비	6.00	4.08	.894**	.802**	1											
PTSD_회피	10.57	6.90	.940**	.907**	.735**	1										
PTSD_과각성	7.38	5.67	.938**	.836**	.868**	.808**	1									
대리외상_총점	48.50	13.80	.915**	.830**	.825**	.843**	.913**	1								
대리외상_회피	9.21	6.85	.875**	.782**	.802**	.808**	.871**	.972**	1							
대리외상_침습	6.89	4.85	.874**	.835**	.745**	.840**	.822**	.930**	.860**	1						
대리외상_과각성	5.77	4.77	.853**	.747**	.792**	.746**	.905**	.934**	.873**	.793**	1					
과보호	18.11	6.50	.474**	.454**	.437**	.447**	.430**	.428**	.408**	.414**	.394**	1				
동료 유대	13.52	4.09	.589**	.601**	.448**	.583**	.538**	.509**	.498**	.493**	.453**	.592**	1			
일반적 불신	16.88	6.93	.769**	.693**	.667**	.713**	.783**	.755**	.775**	.642**	.709**	.265*	.497**	1		
직무 만족	13.70	5.97	.098	.154	.049	.084	.075	-.014	-.012	-.016	-.011	.105	.360**	-.101	1	
조직 몰입	10.63	4.11	.482**	.535**	.389**	.456**	.411**	.375**	.375**	.375**	.309*	.281*	.531**	.323*	.594**	1

** α .01, * α .05.

〈표 4〉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대리외상 집단

변수	수준	빈도	퍼센트	집단구분	빈도	퍼센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거의없음	22	39.3	저위험군	22	39.3
	보통수준	13	23.2			
	심각수준	15	26.8	고위험군	34	60.7
	매우심각수준	6	10.7			
대리외상	거의없음	17	30.4	대리외상-무	17	30.4
	경미수준	11	19.6	대리외상-유	39	69.6
	보통수준	8	14.3			
	높은수준	4	7.1			
	심각수준	16	28.6			
전체		56	100	전체	56	100

에게 묻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대리외상을 측정하는 STSS는 간접 외상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척도의 절단점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척도를 개발한 Bride et al.(20014)은 대리외상 증상의 정도에 따라 5개 수준

으로 나누고 수준 별 점수 범위를 제시했으나 이는 응답자의 비율에 따라 집단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지 별도의 절단점 연구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대리외상 증상이 ‘거의 없거나 없는’ 수준은 ‘전혀’와 ‘가끔’을 비슷한 비율로 택해야 나올 수 있는 점수를 최대값

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산출된 점수의 해석이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리외상 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집단과 그 외 나머지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응답자의 69.6%(56명 중 39명)가 경미한 수준 이상의 대리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인관계 심리반응을 비교하면 동료유대($F=11.466, p<.05$)와 일반적 불신에서($F=44.476, p<.001$) 고위험군이 저위험군보다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직효과성 변인 중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조직몰입이었고, 고위험군은 11.85점, 저위험군은 8.7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824, p<.01$).

4.2. 대리외상

대리외상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인관계 심리반응 점수를 보면, 동료유대($F=10.920, p<.01$), 일반적 불신($F=36.018, p<.001$) 모두에서 대리외상-유 집단의 점수가 대리외상-무 집단의 점수보다 높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다.

4.3. 영상시청시간의 영향력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직급, 근무연한에 따라 집단을 나눠 분산분석을 했을 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점수 혹은 대리외상 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비교적 일관되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는 유일한 변수는 영상시청시간으로, 이 변수는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수사자료인 동영상의 시청시간을 의미한다. <표 7>과 같이 영상시청시간에 따라 집단을 나눴을 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표 5>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심리반응 및 조직효과성

변수	전체(N=56)		저위험군(N=22)		고위험군 (N=34)		$F(d=1, 54)$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과보호	18.11	6.499	16.14	6.749	19.38	6.095	3.482	.067
동료유대	13.52	4.09	11.41	4.797	14.88	2.89	11.466	.001
일반적 불신	16.88	6.931	11.14	4.507	20.59	5.566	44.476	< .001
직무만족	13.7	5.972	12.95	7.339	14.18	4.957	0.555	.46
조직몰입	10.63	4.11	8.73	4.355	11.85	3.483	8.824	.004

<표 6> 대리외상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심리반응 및 조직효과성

변수	전체(N = 56)		저위험군(N=17)		고위험군 (N=39)		$F(d=1, 54)$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과보호	18.11	6.499	15.12	6.999	19.41	5.897	5.596	.022
동료유대	13.52	4.09	11	5.074	14.62	3.049	10.92	.002
일반적 불신	16.88	6.931	10.29	4.18	19.74	5.861	36.018	< .001
직무만족	13.7	5.972	13.53	7.674	13.77	5.178	0.019	.892
조직몰입	10.63	4.11	9.24	5.13	11.23	3.483	2.886	.095

<표 7> 영상시청시간에 따른 외상 수준의 및 일반적 불신 수준의 차이

변수	영상시청시간	N	평균	표준편차	F(3, 52)	유의확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총점	1시간 이하	16	23.18	18.544	2.931	.042
	2~3시간	13	27.61	18.163		
	3~4시간	11	38.36	14.834		
	4시간 이상	16	41.18	23.227		
	전체	56	32.33	20.312		
대리외상 총점	1시간 이하	16	15	12.801	3.924	.013
	2~3시간	13	17	12.028		
	3~4시간	11	24.27	12.321		
	4시간 이상	16	31.06	18.689		
	전체	56	21.88	15.626		
일반적불신	1시간 이하	16	12.94	5.397	3.143	.033
	2~3시간	13	16.85	5.161		
	3~4시간	11	19.91	7.368		
	4시간 이상	16	18.75	7.904		
	전체	56	16.88	6.931		

점수, 대리외상 점수, 그리고 일반적 불신 점수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대리외상의 총점 및 하위 요인별 점수에 대해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시행했을 때 1시간 이하 시청 집단과 4시간 이상 시청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경향성은 있었음에도 본 연구의 표본크기가 작고 점수들의 편차가 커서 검정력이 높지는 않기에 <표 7>에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56명으로 매우 작아 통계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일원공분산분석을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GPower 3.1.9.2를 이용해 산출한 적정 표본크기는 중간 수준 효과크기,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비교집단 수 4개, 공변량 1개로 설정했을 때 최소 279명으로 나와 현재의 표본크기 56명과 차이가 컸다. 큰 효과크기를 가정하고 집단 수를 3개로 단순화해도 현재 표본으로는 검정력이 .766밖에 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80이라는 기준에(Cohen, 1992) 미치지 못했다.

회귀분석을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2개의 독립변수, 중간 효과크기, 검정력 0.8인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은 80으로 나와 회귀분석을 할 수 없었다.

박원우 등(2010)는 적정 수준 이하의 표본크기를 사용했음을 인정한 대부분 연구가 ‘분석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만 한계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더 중요한 문제는 부족한 표본크기가 통계적 검정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 표본크기만 충분했다면 유의한 효과가 검증될 수 있었음에도 작은 표본으로 인해 실제 효과를 없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도출되지 않은 결과도 표본크기가 커진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으며, 표본크기가 크다면 다양한 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변수 간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작은 표본크기는 큰 아쉬움을 남긴다.

5. 심리지원제도 연구 결과

심리적 외상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을 위한 조직의 노력은 개인과 조직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즉, 스스로 외상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 심리지원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지원이 개입하는 단계에 따라 예방, 치료, 개선(환류)을 위한 심리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외상 수준이 심각한 것은 직업 특성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조직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심리지원제도의 예방 및 치료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심리지원제도에 관한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인식, 이용현황,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수사관의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업무의 특성상 심리적 외상 위험이 높은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은 어쩌면 평균 이상의 이용률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그 어느 부서보다 심리적 관리가 필요한 이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온라인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 수사팀에 맞게 관련 정책이 이미

수립되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근거 기반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1. 국내 심리지원제도 이용 현황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심리지원제도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인지도는 해당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빈도이고, 이용의사는 향후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와 ‘매우 있다’는 응답의 빈도를 합한 것이다. 만족도 문항도 설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각 제도의 이용률 즉, 이용 경험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평균 2% 미만 즉, 56명 중 1명 수준으로 극히 낮아 이용자의 만족도는 의미 있는 수치를 도출하기 어려워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긴급심리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모른다고 했으나 긴급 심리지원 이용의사가 있거나 매우 있는 경우는 53.6%로 나타나 홍보가 잘 이루어지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상담 제도는 약 80%가 모르고 있으며, 제도를 이용해본 응답자는 전체의 3.6%인 2명에 불과했다. 향후 지정상담 제도 이용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57.1%였다. 마음동행센터 상담 인지도는 약 89%로 모든 심리 서비스 프로그램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39%(22명)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용해 본 응답자의 만족도는 부정 평가가 45.5%, 긍정 평가가 54.5%로 나타나

<표 8> 심리지원제도 인지도 및 이용의사 빈도(퍼센티지)

	긴급심리지원	지정상담	마음동행센터	공감힐링과정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템플스테이	민간상담소
인지도	15(26.8%)	11(19.6%)	50(89.3%)	28(50%)	16(28.6%)	32(57.1%)	20(35.7%)
이용의사	30(53.6%)	32(57.1%)	36(64.3%)	39(69.7%)	34(60.7%)	35(62.5%)	28(50%)

부정 평가가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향후 마음동행센터 상담 이용의사가 없는 응답자도 35.7%로 적지 않아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것에 비해 상담 품질 및 효과성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감힐링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50%가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향후 공감힐링제도 이용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69.6%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은 인지도는 낮으나 이용의사는 높은 편이었다(60.7%). 템플스테이 제도는 이용 경험자의 평가가 긍정적인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었고, 이용의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62.5%). 민간상담소를 통한 상담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35.7%만 알고 있었고 이용의사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50%). 이는 시간을 내서 외부의 민간상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부담, 조직 내 시선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 9>는 심리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수사관들이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는지 빈도분석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의무상담제도 필요성에 대해 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정기심리평가 50.4%, 민간상담소 심리치료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57.1%, 상담이용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51.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방안 중 정기적인 심리평가의 필요성 평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수사관들이 평균적으로 심리 치료보다 정신 건강 유지 및

관리의 필요성에 더 공감한다고 볼 수 있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상담이용시설 확대였는데 이는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는 수사관들에게 문제는 상담시설의 부족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민간상담소 이용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 상담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심리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내기 어려워(33.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8.0%),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불편해서(12.8%), 신뢰성이 없어서(12.0%)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업무량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심리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이며, 상담제도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 역시 제도를 이용하는 가로막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평소 직장이나 가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스트레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1순위는 휴식을 취한다(25%), 2순위는 운동 등의 활동적 행위를 한다(21.8%), 3순위는 여행을 한다(11.5%)로 나타났으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응답은 동료(8.3%), 가족(7.7%), 친구(3.2%) 순으로 모두 합하면 19.2%였다. 부정적 대처인 음주(8.3%) 및 흡연(4.5%)을 합하면 9.8%로 나타났으며, 마음에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9%(3건), 해소 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3%(2건)이 있었다. 이는 개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 및 해소 방안에 대한 훈련 및 안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9> 심리지원제도 개선 방안 및 필요성

	평균(표준편차)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의무상담제도(월1회)	3.34(1.339)	8(14.3%)	6(10.7%)	14(25%)	15(26.8%)	13(23.2%)	56(100%)
정기심리평가(연간단위)	3.54(1.348)	6(10.7%)	5(8.9%)	14(25%)	17(30.4%)	14(25%)	56(100%)
민간상담소 비용지원	3.5(1.265)	6(10.7%)	5(8.9%)	13(23.2%)	18(32.1%)	14(25%)	56(100%)
상담이용시설 확대	3.52(1.265)	8(14.3%)	1(1.8%)	18(32.1%)	11(19.6%)	18(32.1%)	56(100%)

5.2. 해외의 심리지원제도

경찰 수사관 본인이 원하면 심리상담 및 치료는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국내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이버성폭력수사관들의 인지도와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심리지원 정책과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실마리를 얻고자 해외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2015년 발간된 “온라인 아동 성착취 수사팀과 민간 부문 내 건강 정책 제도 및 시행에 관한 검토(A Review of the Health and Wellness Policies and Practices among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Units and Private Sector Partners)” 보고서를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아동성착취물 모니터링과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별 사이버 수사기관 및 민간 기관들이 모여 구축한 협력체인 VGT (Virtual Global Taskforce)에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리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Sinclair

et al., 2015).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별 수사기관의 약칭과 공식 명칭은 <표 10>과 같다.

VGT는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기관들의 협력체이고 국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더욱 광범위한 수사업무를 맡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수사 절차가 유사하고 외상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범죄 영상물에 자주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제도와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Sinclair et al.(2015)은 심리지원 정책 및 제도를 네 단계로 구분했는데, 사이버 수사팀 선발 이전 단계, 사이버수사팀 선발 단계, 사이버수사팀 선발 이후 단계(현직 수사관 대상), 사이버수사팀 이직 후 단계(전직 수사관 대상)가 그것이다. 각 단계별 심리지원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1. 사이버수사팀 선발 이전 단계

뉴질랜드 OCEANZ, 영국 NCA-CEOP, 호주 AFP, 캐나다 RCMP CPCMEC/BSB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 선발 전에 심리평가를 1개 이상, 1회 이상 시행하며, 전문가(심리학자)와의 심층 면담 절차까지 마련한 경

<표 10> 해외 사이버성폭력 수사기관

국가	약칭	기관의 공식명칭
미국	US DHS ICE: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캐나다	RCMP CPCMEC/BSB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s Canadian Police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Behavioural Sciences Branch
뉴질랜드	OCEANZ	New Zealand Police's Online Child Exploitation across New Zealand
호주	AFP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영국	UK-NCA CEOP	United Kingdom's National Crime Agency –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ommand
네덜란드	DNP NPKK	The Dutch National Police's Nationaal Programma ter bestrijding van Kinderporno en Kindersekstoerisme
스위스	fedpol-CYCO	The Federal Office of Police – Cybercrime Coordination Unit Switzerland
이탈리아	IPCPS	The Italian Postal and Communication Police Service
유럽(Europol)	EC3 FPT	European Cybercrime Centre Focal Point Twins

우도 있다. 이때 사용하는 심리평가의 종류는 기관별로 상이한데 PEPQ-PC(PsychEvalPersonality Questionnaire Interpretation for Professional Counselors), DASS 21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cale), PCL-R(Psychopathy Check List-Revised), MMPI-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등 다양한 검사가 사용된다.

5.2.2. 사이버수사팀 선발 단계

이 선발 단계의 중점 사항은 지원자들이 사이버성폭력 수사 업무에 관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OCEANZ는 성폭력 영상물 시청을 포함해 업무의 성격에 대해 지원자에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국 NCA-CEOP는 업무 수행 중 보게 될 이미지가 어떤 것들인지 팀장이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수사 중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 및 부작용,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는 점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호주 AFP와 스위스 fedpol-CYCO는 지원자 평가 과정 중에 실제 업무 미리보기(realistic job preview) 절차를 포함시키는데 이는 아동성착취 이미지를 보여주고 개인적 대처 전략을 사용해 보도록 함으로써 지원자의 심리적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다. 캐나다 RCMP CPCMEC/BSB는 지원자의 심리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기존 팀원과 함께하는 집단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이 때 성폭력 자료에 노출시키는 직무체험(job preview)을 시행한다. 미국 DHS ICE는 일정 자격을 갖춘 동료들이 주축이 된 동료 지원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 멤버와 공인된 정신 건강 전문가를 통해 지원자가 반드시 심리적 예방접종(즉, 성폭력 자료에 노출)을 해야 하고, 심리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3. 사이버수사팀 선발 이후 단계

(1) 정기/비정기 심리평가

캐나다 RCMP CPCMEC/BSB는 의무적으로 수사팀 합류 후 6개월이 지나면 심리평가(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BDI-II, 알코올 검사, 심리학자와 임상 면담)를 진행하고 이후 12개월마다 동일한 평가를 한다. 또 당사자 혹은 상사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호주 AFP는 업무 특성에 따라 6개월마다 혹은 1년마다 심리측정 평가(AUDIT, DASS, PCL-C, ProQOL)를 하고 전문가와 반구조화된 면담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뉴질랜드 OCEANZ는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분기별) 심리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주기는 연간 단위로 평가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면담 정보를 상사에게 통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NCA-CEOP는 선발 후 1개월 이내에 심리학자와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하며 이후로는 매년 상담을 실시한다. 스위스 fedpol-CYCO는 일 년에 2회 의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IPCPS는 아동성착취물에 노출된 모든 수사관에게 개인 면담을 제공하고, 특히 비밀작전을 수행한 팀원 및 법의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아동성범죄자와 상호작용한 수준에 따라 집중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 DNP NPKK는 건강 전문가와 연간 단위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Europol 사이버 범죄 센터 역시 의무적으로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그룹 상담 1회, 개인 상담 1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관리자를 상담하는 상담사와 직원을 상담하는 상담사를 다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수사관의 의무적인 심리평가제도를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사관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심리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성착취물 자료 노출 시간 제한

호주 AFP는 아동성착취물 자료 노출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OCEANZ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이상 시청하려면 책임자에게 반드시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영상 자료는 부정적 영향 줄이기 위해 반드시 2인이 동시 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NCA-CEOP는 규정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권고 사항으로 영상시청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청 제한 시간은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관리자는 4시간 초과가 적절하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처럼 시청 시간에 제한 규정이 있는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3) 기타 근무 환경 관련 규정

미국 DHS ICE는 동료지원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 선발 후 첫 2주간 동료지원멤버를 매일 만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멤버는 멘토로서 신규 팀원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수사관과 그 가족의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 1년에 4회 Wellness 그룹 미팅에 참석해야 하며, 이 중 두 번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석해 교육 및 상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AFP는 아동성착취물 자료를 볼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팀의 작업 공간을 배치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수사관들의 사무실 환경은 고립감은 최소화하되 팀원 간 지원이 용이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네덜란드 DNP NPKK는 일반 보건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온라인 아동 성착취 부서 포함 모든 부서에 컴퓨터 사용 시간 제한, 최대 교대 근무 시간 설정, 의무적인 휴식 및 휴일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 착취/아

동 학대 조사관은 맡은 업무에 따라 정신 회복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5.2.3. 사이버수사팀 이직 후 단계

마지막 단계는 팀을 떠난(퇴사/이직/이동) 전직 수사관 대상 심리지원에 관한 것이다. 뉴질랜드 OCEANZ는 수사관 퇴사/이직/이동 후 최대 2년 동안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DNP NPKK는 사이버수사팀 전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일반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영국 NCA-CEOP는 팀을 떠나기 전 심리학자와 종료 브리핑에 반드시 참석해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요청 시 최대 6개월 간 상담을 제공한다. 호주 AFP는 일상적인 심리검사(PEPQ-PC, ProQOL, AUDIT, DASS-21 및 PCL-R)를 시행하고 실무자와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팀을 떠나는 수사관의 현재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캐나다 RCMP CPCMEC/BSB 역시 반드시 심리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이때 MMPI-2 검사를 사용하며 이와 함께 심리학자와의 면담도 진행한다. 그 결과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임시적인 근무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해외 수사기관은 정기적인 의무적 심리평가가 체계를 갖추고 있고, 수사관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심리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다수 기관이 정기의무 심리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성착취 동영상 시청 및 관련 수사가 유발하는 스트레스와 대리외상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기관에서는 성착취 영상물의 시청을 하루 4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컴퓨터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외

상후스트레스장애, 대리외상, 대인관계심리반응 점수에서 4시간 미만 시청 집단과 4시간 이상 시청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아무래도 하루 4시간이 수사관이 감당할 수 있는 평균적 역치 수준 혹은 경계 수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관 1인당 하루 시청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수사 인력의 충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단기간 내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현직 수사 인력의 정신건강 수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리평가제도의 의무화, 정례화부터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 외상후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은 응답자 56명 중 34명으로 60.71%이고,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은 39명으로 69.6%를 차지해 신성원(2012)의 연구에서 일반 경찰관이 33.3%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인다는 결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다른 직군에 비해 사이버성폭력수사관들의 심리적 외상 수준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작은 표본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유의한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려웠으나 평균적으로 여성이고, 40대이고, 기혼인 경우에, 그리고 특채로 입사한 경우, 경위 직급인 경우에 대리외상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작은 표본크기에도 불구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총점, 그 하위 요인 중 회피, 수면과 정서마비, 대리외상의 총점, 그 하위 요인 중 회피, 과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영상시청 시간으로 나타났다. 하루 4시간 이상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1시간 이하로 시청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외상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4시간 이상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개인의 정신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심리지원제도 중 마음동행센터 상담만 89.3%의 인지도를 보였고, 다른 제도들의 인지도는 50%를 넘지 못하였다. 또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은 현저히 낮아서 수사관들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지원제도 향후 이용의사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이용의사가 50% ~ 68% 사이로 나타났다. 필요성에 관해서는 의무상담제도는 50%, 정기심리평가는 50% 이상, 민간센터 심리치료 비용 지원은 55%이상, 상담이용시설 확대는 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6.1. 국내 심리지원제도 개선 방향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정신건강상태가 매우 위험한 수준임에도 이들의 심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제도 이용 현황을 보면 심리적 문제의 예방, 치료, 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경찰조직의 심리지원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을 선발하기 전에 심리평가와 면담을 실시하고 선발 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대리외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발 단계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MMPI-2, SCL-90-R 등의 임상척도를 사용해 사전 심리평가와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심리평가는 수사관 선발(혹은 배치) 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수사관도 장기간 유해한 영상물에 노출되면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에게 1년에 최소 1번 의무적으로 심리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다양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거나 심리치료비용을 지원해 치료가 빨리 이뤄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정기적 평가 외에 평상시에도 간단한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 IES-R-K과 같은 간단한 척도 혹은 수사관 전용 척도를 개발해 사용한다면, 심리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심각한 만성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지원자에게 업무의 성격에 대해 미리 고지하는 절차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해외 수사기관 사례에서 본 것처럼 심리적 예방접종(psychological vaccination)의 일환으로 실제 수사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물론 자발적인 지원과 선발의 과정을 거쳐 수사팀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수사업무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정보제공, 교육, 영상에 대한 사전 노출은 반드시 필요하며 업무수행 중에도 반복적인 심리교육을 통해 개인 수준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경우 남성 수사관에 비해 대리외상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공감 수준이 높아져 그런 것일 수도 있으나 피해자 면담 및 지원, 24시간 핫라인 대응 등을 남성 수사관보다 훨씬 수가 적은 여성 수사관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 여성수사관에게는 이러한 추가적인 전담 업무에 대한 고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이버성폭력 영상의 시청 시간을 하루 4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에도 영상을 4시간 이상 시청하는 수사관 집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대리외상 수준이 매우 높았다. 해외 여러 수사기관도 4시간으로 영상 시청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거나 규정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컴퓨터 사용시간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팀 전체적으로 인력이 충원돼야 영상 시청 시간 제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심리지원 방법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2014년 트라우마센터로 시작한 마음동행센터는 현재 전국에 총 18개 센터가 있으나 상주하는 상담 전문 인력은 26명에 불과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음동행센터 상담에 대한 수사관들의 기대 수준이 낮고, 실제 이용해본 수사관들의 만족도 역시 낮았다.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개로 지정상담 대상 수사팀/수사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상담 횟수를 현실화하는 등 수사관의 정신건강 현황에 근거해 상담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즉각적인 외상 대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민간상담소 접근성 강화 등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과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의 경우 미국에서처럼 동료 지지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사에 관한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이 초기에 겪는 심적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상당한 심리적 불편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경력 초기의 심리적 경험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가 가까이 있다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수월할 것이다. 경찰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일정 수준의 심리치료와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동료 경찰관은 도움이 필요한 동료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내

포래상담자, 군대 내 포래상담병처럼 경찰 조직 내에도 이러한 동료서포터가 있다면 초기 경력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의 일부 경찰조직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현직수사관을 선발하여 준상담자(para counselor)교육 이수 후 상담수사관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Copple et al., 2019).

마지막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찰 문화의 특성상 경찰관들은 심리지원 프로그램에도 경계심을 갖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신성원, 2012).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 남성은 도움추구 성향이 낮다(임수진, 노안영, 2008).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와 강인한 사람이라는 개인의 내재화는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자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 내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프로그램의 질 개선, 다양화, 제도화는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6.2.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이버성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국내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외상 수준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다. 다만 국내 수사관의 수가 아직 많지 않아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표본크기가 작아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즉, 결과의 일반화와 낮은 검정력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가 탐색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

다. 더 큰 표본을 쓴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유의한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외상후스트레스 척도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부터 직접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대리외상 척도는 간접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에 계속 노출되는 수사관에게는 대리외상 측정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대리외상 척도의 변안, 타당도, 절단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거의 찾을 수 없었기에 대리외상 집단을 구분하는 과정에 연구자들의 주관의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피해자의 외상이 아닌, 그간 상대적으로 외면 받았던 ‘피해자를 돕는 이들의 대리 외상’을 다루었고,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리외상 연구이며, 또 이들의 외상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탐색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이버성폭력을 다루는 수사관들을 위한 구체적인 심리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 최초의 국내 연구이기에 후속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경찰청 (2020). **2020 경찰통계자료**. 서울: 경찰청.
2. 경찰청, Keapa (2020). **마음동행 경찰 긴급심리지원 가이드북**. 서울: 경찰청·Keapa.
3. 권상집 (2016).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지식공유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지식경영연구**, 17(1), 89-109.
4. 권혜수 (2011). 성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 관련 변인 연구: 상담유형, 외상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415-430.
5. 김대중 (2021). **과학수사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원대학교 대학원.
6. 김인아 (2013). **2013년 경찰질병건강연구 최종보고서**.
7. 김인철 (2020). **경찰과학사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연구: 전국지방경찰청 과학사무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8. 김중길 (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6, 31-54.
9. 남희경 (2015). **외상 상담자의 대리외상에 관한 연구: 대리외상 경험에 관한 탐색 및 척도개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0. 노선미, 김은아 (2017). 경찰 과학사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영향요인.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47(1), 39-47.
11. 박상의, 정유지, 이정현 (2018). 미디어 노출에 의한 간접외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설문 조사 연구. **불안과 정서**, 14(2), 71-79.
12. 박원우, 손승연, 박해신, 박혜상 (2010). 걱정 표본크기 결정을 위한 제언. **노사관계연구**, 21, 51-85.
13. 박지영 (2011).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33-57.
14. 부민서, 조운오 (2021). 경찰관의 외상후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5(2), 161-177.
15. 신성원 (2012). 경찰공무원의 조직적 특성과 PTSD 수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77-78.
16. 신준희, 김영근 (2021).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서 정서적 자기노출, 정서조절 및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323-343.

17. 심서영, 손영우, 박상현, 윤지원 (2016). 재난피해자의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소득의 조절효과. **한국안전학회지 (구 산업안전학회지)**, 31(6), 105-112.
18. 안재열, 이상진 (2022). 디지털 성착취물 수사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3), 85-107.
19. 유수동, 전성훈 (2017). 승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성시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3), 275-303.
20.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레,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4(3), 303-310.
21. 이종건, 광원준 (2015). 종업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와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 피드백의 조절역할. **벤처창업연구**, 10(5), 165-173.
22. 이혜서, 신효정 (2021).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257-265.
23. 이환범, 이수창 (2006).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3(2), 83-101.
24. 이희선 (2012). 경찰·소방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1), 57-70.
25. 임노직, 김영숙 (2021). 중환자실 간호사의 외상성 사건 경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 **임상간호연구**, 27(3), 257-266.
26. 지성구, 최선규 (2013). 조직내 심리적 조건이 창의적 업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예상되는 이미지 결과의 매개효과-. **지식경영연구**, 14(2), 49-70.
27. 진종순 (2014). 직무탈진감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해양경찰 파출소와 출장소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2), 331-354.
28. 허병준, 이형용 (2021). 조직정치지각에 따른 반응 행동: 냉소주의의 매개효과와 조직몰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2(3), 107-127.

[국외 문헌]

29.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 disorders(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30. Bengt, B. A., Dana, C. N., Mark, A. L., Lena, B., & Ake, L. (2009). Trauma resilience training for police psychophysiological and performance effects. *Journal of Police Crime Psychology, 24*, 1-9.
 31. Breslau, N., Davis, G. C., Andreski, P., & Peterson, E. (1991).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n urban population of young adul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3), 216-222.
 32. Bride, B. E. (2007). Prevalence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social workers. *Social Work, 52*(1), 63-70.
 33. Bride, B. E., Robinson, M. M., Yegidis, B., & Figley, C. R.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4*(1), 27-35.
 34. Burruss, G. W., Holt, T. J., & Wall-Parker, A. (2017). The hazards of investigating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Digital evidence handlers' experiences with vicarious trauma and coping behavior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3), 433-447.
 35. Carleton, R. N., Afifi, T. O., Turner, S., Taillieu, T., Duranceau, S., Lebouhillier, D. M., & Groll, D. (2018). Mental disorder symptoms among public safety personnel in Canada.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63*(1), 54-64.
 36. Clair, M. 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incidents, hostility and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Doctoral dissertation, Drexel University.
 37.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38. Copple, C., Copple, J., Drake, J., Joyce, N., & Robinson, M. et al. (2019). *Law enforcement mental health and wellness programs: Eleven case studies*. 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39. Fox, J., Desai, M. M., Britten, K., Lucas, G., Luneau, R., & Rosenthal, M. S. (2012). Mental-health conditions, barriers to care, and productivity loss among officers in an urban police department. *Connecticut Medicine, 76*(9), 525-531.
 40. Gray, S. E., & Collie, A. (2017). The nature and burden of occupational injury among first responder occupation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 Australian workers. *Injury, 48*(11), 2470-2477.
 41. Hartley, T. A., Sarkisian, K., Violanti, J. M., Andrew, M. E., & Burchfiel, C. M. (2013). PTSD symptoms among police officers: Associations with frequency, recency, and types of traumatic ev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ency Mental Health, 15*(4), 241-253.
 42. Haugen, P. T., Evces, M., & Weiss, D. S. (2012). Treat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irst responders: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5), 370-380.
 43. Kadambi, M. A., & Truscott, D. (2008). Traumatizing aspects of providing counselling in community agencies to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A concept map.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42*(3), 192-208.
 44. Marshall, R. E., Milligan-Saville, J., Petrie, K., Bryant, R. A., Mitchell, P. B., & Harvey, S. B. (2021). Mental health screening amongst police officers: Factors associated with under-reporting of symptoms. *BMC Psychiatry, 21*(1), 135.
 45. McCann, I. L., & Pearlman, L. A.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 131-149.
 46. McNally, V. J., & Solomon, R. M. (1999). The FBI's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program.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68*, 20-26.
 47. Mysliwiec, V., Brock, M. S., Creamer, J. L., O'Reilly, B. M., Germain, A., & Roth, B. J. (2018). Trauma associated sleep disorder: A parasomnia induced by trauma. *Sleep Medicine Reviews, 37*, 94-104.
 48. Newell, C. J., Ricciardelli, R., Czarnuch, S. M., & Martin, K. (2021).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police staff and mental health: Barrier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help-seeking.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23*(1), 111-124.
 49. Patterson, G. T.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exposure to traumatic incidents among police officers. *The Australasian Journal of Disaster and Trauma Studies, 2*, 1-9.
 50. Perez, L. M., Jones, J., Englert, D. R., & Sachau, D. (2010).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mong

- law enforcement investigators exposed to disturbing media images.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25*, 113-124.
51. Powell, M., Cassematis, P., Benson, M., Smallbone, S., & Wortley, R. (2014). Police officers'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stress of investigating internet child exploitation. *Traumatology*, *20*(1), 32-42.
 52. Setti, I., & Lourel, M. (2016). The role of affective commit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protecting emergency workers against burnout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Traumatology*, *22*(4), 261-270.
 53. Sinclair, R., Duval, K., & Letellier, B. (2015). *A review of the health and wellness policies and practices among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units and private sector partners*. Virtual Global Taskforce: Psychological Network.
 54. Sinha, S. S. (2016). Trauma-induced insomnia: A novel model for trauma and sleep research. *Sleep Medicine Reviews*, *25*, 74-83.
 55. Stamm, B. H. (2005). *The ProQOL manual: Th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 compassion fatigue/secondary trauma scales*. Baltimore, MD: Sidran Press.
 56.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57. Violanti, J. M., Andrew, M. E., Burchfiel, C. M., Dorn, J., Hartley, T., & Miller, D. B. (2006).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subclinical cardiovascular disease in police offic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3*(4), 541-554.
 58. Williams, L. M., Kemp, A. H., Felmingham, K., Barton, M., Olivieri, G., Peduto, A., Gordon, E., & Bryant, R. A. (2006). Trauma modulates amygdala and medial prefrontal responses to consciously attended fear. *NeuroImage*, *29*(2), 347-357.

〈부록〉

사건충격척도 측정문항

전혀: 0, 드물게:1, 가끔: 2, 자주: 3, 많이: 4

1.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그 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2.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4.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5.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 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7.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
8. 그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것을 멀리하며 지냈다.
9. 그 사건의 영상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10.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11. 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12. 나는 그 사건에 관하여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13.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감각한 느낌이었다.
14. 나는 마치 사건 당사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15.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16.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17. 내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 버리려고 노력했다.
18. 나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9.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 땀, 호흡곤란, 오심,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 반응을 일으켰다.
20.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꿈들을 꾸 적이 있었다.
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22.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대리외상 척도 측정문항

전혀: 0, 드물게:1, 가끔: 2, 자주: 3, 많이: 4

1. 감정이 무뎠다.
2.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을 생각할 때 심장이 뛰었다.
3. 피해자가 겪은 충격을 내가 다시 겪는 것 같았다.

4. 잠을 설쳤다.
5. 미래에 대해 암울하게 느껴졌다.
6.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기억나 기분이 안 좋았다.
7.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관심이 거의 없었다.
8.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9. 평상시보다 덜 활발했다.
10.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성착취물)와 관련된 일이 생각났다.
11.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12. 피해자와 관련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나 장소, 사물을 피했다.
13. 피해자와 관련된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
14. 어떤 특정 피해자는 피하고 싶었다.
15. 화를 쉽게 냈다.
16.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17. 피해자와 면담내용 중 일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대인관계 심리반응 측정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관련 없다: 9

1. 여기서 일한 이후로, 나는 배우자나 연인을 예전보다 더 보호하게 되었다.
2. 여기서 일한 이후로, 내 아이가 다른 어른들 주변에 있으면 긴장된다.
3. 여기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내 아이들이 미디어(영화, TV, 음악, 인터넷)를 통해 노출된 자료의 종류에 대해 걱정한다.
4.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보다 내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 더 불안하다.
5. 이곳에서 일한 이후로 나의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불안하게 생각한다.
6. 나는 이 일이 몇몇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
7. 내 동료들만이 내가 매일 겪는 일을 진정으로 이해 한다.
8.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나는 동료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9. 나는 직장 동료들과 일에 대한 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10.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나는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11. 이 일을 하다 보니 새로운 친구를 사귄 만큼 사람을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다.
12.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13. 이 일을 하다 보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 나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15. 내 일은 나를 더 냉소적으로 만들었다.

● 저 자 소 개 ●



김 보 라 (Bora Kim)

현재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Washington State University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BK연구교수 및 바른ICT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판단과 의사결정, 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사회뉴로인지 등이다. 지금까지 IEEE Access, Behaviour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s Review,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임 수 진 (Lim sujin)

현재 호남대학교 사회경영대학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남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다문화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청소년 위기상담, 성폭력 외상, 인지행동치료 등이다. 지금까지 상담및심리치료학회지, 한국학교심리학회지와 한국범죄심리학회지 등등 주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 Abstract 〉

Proposal on the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for Cyber Sexual Crime Investigators Based on Their Mental Health Survey

Bora Kim^{*}, Sujin Lim^{**}

One of the dark sides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the significant increase in cybercrime. In particular, investigators in charge of cyber sexual crime are repeatedly exposed to video data of illegal sexual violence; hence, they are at high risk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experiencing vicarious trauma. Notwithstanding,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se investigators' PTSD, an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no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vicarious trauma of cyber sexual crime investigator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investigators' mental health status (trauma-related, especially) and examines their perception of the currently operating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Further, by reviewing the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of overseas institutions, we would suggest psychological support and policies necessary for domestic cyber sexual crime units to manage investigators' work stress and prevent mental illness under domestic circumstances.

Key words: Cybercrime, Digital sexual exploitati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Vicarious trauma,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 Honam University

** Honam University